(플랜트-001) ○○공장 신축현장 보 및 데크플레이트 붕괴사고

공사명	○○기업도시 건기식공장 신축공사			
사고일시	2019년 4월 19일(금) 10:33분경		기상상태	맑음
소재지	강원도 원주시	사고 종류	무너짐(붕괴·도괴)	
구조물 손실	데크플레이트	인적피해	부상 6명	
장비 손실	-	안전관리계획서 수립 대상 여부	해당(〇)	, 해당없음()

가. 사고개요

1) 공사개요

○ 공사종류 : 공장

○ 공사면적: 건축면적 10.009㎡, 연면적 23.503㎡

○ 공사규모 : 지하 1층, 지상 4층○ 공사기간 : 2018.8~2019.12

2) 사고경위

○ 지하1층 상부슬래브 콘크리트를 타설하던 중 보 및 데크플레이트가 붕괴되면서 동시에 근로자가 추락함

3) 사고원인

- 건축물 배면의 옹벽과 보(G11) 부재와의 연결을 위해 스터드볼트(∅19)와 베이스 플레이트(철 재)를 용접하여 옹벽시공 시 콘크리트내 매립함
- 베이스플레이트와 보를 연결한 상태에서 콘크리트 타설 중 하중증가에 따른 스터드 볼트와 베이스플레이트간의 용접불량으로 전단력이 부족하여 용접부위가 파단되면서 보와 데크플레이트 붕괴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

나. 재발방지대책

- 보의 양끝을 지지물로 고정시켜 보의 미끄러짐 및 탈락을 방지하여야 한다.
- 보와 보 사이에 수평연결재를 설치하여 보가 옆으로 넘어지지 않도록 견고하게 하여야 한다.
- 거푸집을 조립하는 경우에는 거푸집이 콘크리트 하중이나 그 밖의 외력에 견딜 수 있거나, 넘어지지 않도록 견고한 구조의 긴결재, 버팀대 또는 지지대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

사고현장 위치도





